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1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추미애 · 박은정 · 서미화
박정현 · 이재강 · 전현희
이성윤 · 윤준병 · 부승찬
김준환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발전용댐 저수 활용 협약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조의2(발전용댐 저수 활용</u> <u>협약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u> <u>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u> <u>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u> <u>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u> <u>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u> <u>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u> <u>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u> <u>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u> <u>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u></p>